

경기도 공고 제2026-40호

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해양수산부 「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」에 의거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14.

경 기 도 지 사

1. 신청자격

「수산업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수산종자산업법」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(어업권의 행사 포함) 또는 허가(시험어업허가 포함)를 득하거나,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(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등)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

\* 어업경영체란?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

2. 신청절차

가. 신청기간 : 공고시 ~ 2026년 2월 7일(공휴일 제외)

나. 신청대상 : 어류, 새우류, 자라류, 패류 양식어가(해면, 내수면)

다. 접 수 처 :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(방문, 팩스 및 우편접수 가능)

- 주 소 : (15651)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수산기술센터

- 전화 및 팩스 : ☎ 031-8008-8358 / F) 032-890-4160

3. 구비서류

가.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각 1부

나. 신용조사서(수협발급)

※ 사업신청 전,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

다. 양식업 면허·허가·신고증 사본 1부 (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 계약서)

라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

마.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

바. 주민등록등본 1부

사.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1부(해당자)

아.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(해당자)

#### 4. 지원내용

가. 사업기간 : 2026. 3. ~ 12월(자금 소진 시까지)

나. 지원방법 :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

다. 지원금리 : 연 1.0%

라. 지원기간 : 2 ~ 3년 일시상환(필요시 분할하여 중도상환 가능)

- 2년 (일시상환) : 패류

- 3년 (일시상환) : 넙치, 조피볼락, 돔류, 농어, 송어류, 뱀장어, 메기,  
새우류, 자라류, 미꾸라지, 기타어류(해면 및 내수면 포함)

마. 지원한도 : 어가(법인) 당 최대 3억원

-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 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대출잔액(당해연도 상환 예정금액 포함)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

\*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고,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·허가·신고권자 등인 경우에도 1어가로 인정

바.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: 2025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(사료비)\* 범위 내(수협) 지원

\* 사업 신청 시 배합사료 구매자금(이차보전)의 지원금액(대출잔액 기준)이 있는 경우 어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

사. 배합사료 구매기간(사후 관리기간) : 대출 시행일로부터 1년

아. 대상사료 : EP, SEP, 뱀장어(자라) 분말사료 등「사료관리법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

#### 5.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

가.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

나.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(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)

다.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(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)

라.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

마. 「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

\* 단, 「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지자체로부터 어장 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·도가 판단하여 선정·지원할 수 있음

사. 「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

아. 「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 및 「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자. 수협중앙회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), 농협중앙회(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),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

차. 공무원(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), 교원(「교원공무원법」, 「사립학교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(단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)

카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·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(단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(☎ 031-8008-836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